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0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및출국명령서취소
원 고 A
피 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20.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및 2013. 2. 7. 한 출국 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2005. 8. 9.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7. 25.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8. 9. 6.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3. 2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2. 10. 25. 피고에게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불허하면서 2013. 1. 2.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12. 20.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신청을 불허하고 2013. 2. 7. 원고에게 2013. 3. 9.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이하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정한 혼인의사로 B과 혼인하여 동거하여 왔으므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9.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다가 2008. 7. 25. 출국하였고, 2008. 9. 6.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경남 김해 소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1. 9. 5.까지 체



류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1.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9. 8. 위 소송의 진행을 이유로 기타(G-1-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으며, 이후 총 4회에 걸쳐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3일 전인 2012. 10. 25. 이 사건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B과의 혼인신고 이전인 2011. 5. 8.부터 2012. 3. 16.까지 7회에 걸쳐 B에게 합계 46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10. 24. 다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B은 2,000만 원을 받은 후 가출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4) 이에 원고는 2012. 12. 13. 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2. 12. 18.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드단11345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5. 2. 소를 취하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9. 2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 위반으로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2012. 12. 20. 출국기한 유예신청 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타 자격으로 2011. 10. 1.부터 2012. 5. 31.까지 부산 사상구 소재 'D'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2. 7. 범칙금 400만 원의 통고처분 및 출국명령을 받았다.

6)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2. 11. 22. 및 2012. 11. 25., 2012. 12. 3.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B을 처음 만난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1.경에 B이 일하는 헤어샵(헤어샵 이름은 모른다고 함)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B이 작성한 교제경위서에는 위 진술과 달리 2010. 9. E헤어샵에서 원고를 처음 만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교제경위서에는 원



고가 B를 만나기 위하여 F미용실에 자주 들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면담시 원고는 F 미용실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B 작성의 교제경위서와 원고의 진술이 불일치한다.

○ 원고와 B의 동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2. 11. 22.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한 결과 B과 동거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 원고는 B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고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와 B이 동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거사실확인서를 작성한 G, H는 원고와 B이 실제 동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데, B이 동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결혼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에게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호가.목에서는 결혼이민자격(F-6)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의 배우자'를 들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B이 처음 교제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어긋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원고와 B이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동거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혼인신고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고, 원고는 국내



에서의 취업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이후에도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과 한 혼인신고는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와 B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체류자격)

-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

-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1. 28. 대통령령 제2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09-04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의4.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